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7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6호(2017. 6. 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내역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 방식)	위 치	면 적(㎡)	해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한)
기정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송파구 마천동 283 일대	133,830	2020. 5. 2.
변경 (연장)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송파구 마천동 283 일대	133,830	2022. 5. 2.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19) 또는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89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8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83-296호(1983.9.7.)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1997-39호(1997.9.1.)로 실시계획 인가된 품질시험소 부지(서초구 우면동 15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실시계획이 변경 작성되어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장